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 (신상신고, 회비납부) ① ~ ② (생략) ③ 입회비는 신입회원이 신상신고시 납부하는 등록비로서 분회, 지부 및 중앙회 입회비로 구분하며 지부, 분회 입회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지부, 분회에서 정한다. <단서신설> ④ ~ ⑪ (생략) <신설>	**제1조 (신상신고, 회비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입회비는 신입회원이 신상신고시 납부하는 등록비로서 분회, 지부 및 중앙회 입회비로 구분하며 지부, 분회 입회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지부, 분회에서 정한다. 다만, 각각의 입회비를 1회 이상 기완납한 회원에게는 입회비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와 지부 및 분회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의 신상을 파악하여 신상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상등록이 된 경우에는 신상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당연직의 이사는 당해 지부총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삭제>
제13조 (선출방식) ① 중앙대의원은 정관 제25조에 따른 각 지부의 중앙대의원 숫자를 각 분회 회원수의 비례로 배정받아 중앙대의원 숫자만큼을 각 분회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부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이 경우 분회총회는 구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대의원 선거의 관리는 제41조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두호천 및 자천으로 후보자를 정하여 소정의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정한다.	
② (삭제) <신설>	② 대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부·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2. 대의원 정원의 지부별·분회별배정 3. 대의원과 예비대의원의 자격심사 4. 선거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대한 심의 및 처분 5. 기타 정관 및 제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③ 정관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회원수에 미달되는 분회는 인접 분회의 회원수를 합한 수의 회원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되 그 기준과 파견대의원의 소속 분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 선거에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2. 대의원 정원의 분회별 배정안 작성·보고 3. 대의원과 예비대의원의 자격심사 4. 선거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대한 심의 및 처분 5. 기타 정관 및 제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④ 지부대의원의 수는 지부회칙에 따라 정하고 그 선출은 중앙대의원 선출방법에 준한다.	④ 대의원선거에서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인명부 관리 및 확정 2.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와 선거권자 자격심사

⑤ 중앙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이 한 분회에서 7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반회에서 제1항의 방법에 준하여 선출하여 분회 및 지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3. 선거운동 관리 4. 선거계도 및 선거분쟁의 조정 5. 선거공보의 제작과 발송 6. 투표방법의 결정과 투표 및 개표관리 7. 선거결과의 결정·발표 및 보고 8.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 및 처분 9. 기타 정관 및 제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삭제>
<신설>	**제13조의2(대의원 정원의 배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각 지부별 대의원 정원을 배정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분회별 배정안을 참고하여 각 분회별 대의원정원을 배정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25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대의원 1인당 회원수에 따라 정관 동조항을 준용하여 각 분회별 대의원 배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의원 1인당 회원수에 미달되는 분회는 인접분회의 회원수를 합한 수의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

	되 배정하는 기준과 대의원의 소속분회를 포함하여 배정안을 작성하여야한다.
<신설>	**제13조의3(대의원 선거)** ① 정관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대의원은 구두호천 및 자천으로 후보자를 정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거권은 제40조에 따른다. ③ 대의원선거의 투표방법은 정관 및 제규칙과 지부회칙 및 분회회칙의 범위안에서 분회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배정받은 대의원 정원이 4이상인 경우 대의원 정원의 2분의1 기표수이내에서 1인다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배정받은 대의원이 3인인 경우 1인2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분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선거결과를 후보자·분회회원에게 통보·발표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관제25조제6항에 의해 선출된 예비대의원이 모두 승계하였음에도 제13조의2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정원에 미달되고 대의원의잔여임기가 1년이 넘을 때에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대의원과 예비대의원을 6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른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의4(불복절차 등)** ①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결과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회 재적선거인 5분의1 이상의 선거인이 불복이유 등을 작성하여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당해 결정의 변경이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복신청을 받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불복신청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의하여 처분을결정하고, 불복신청자와 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처분내용을통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불복신청내용과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회 재적선거인 3분의1 이상의 선거인이 불복이유 등을 작성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해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 등을 요청할수 있다. ④ 제3항의 불복신청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복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의하여 처분을결정하고, 불복신청자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및 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처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부선거관리위원회와 분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처분에 따라야 하며, 분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보고) ① 지부장 및 분회장은	**제31조 (보고)** ① ----------

매회계년도 종료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지부는 본회에, 분회는 지부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기타 회장 및 지부장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내용 ② ~ ③ (생략)	---------- ---------- ----------. 1. ~ 4. (현행과 같음) 5.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현황 및 변동사항 6.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 (지부·분회 운영 등) 지부·분회의 운영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지부·분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제34조 (지부·분회 운영 등)** ①지부·분회의 ---------- 정관 및 제 규칙·규정(이하 본조에서 '정관 등'이라고 한다)의 ---------- ----------. ② 지부의 회칙이 정관 등에 위반된 경우나 분회의 회칙이 정관 등 및 지부회칙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 ③ 회장은 지부 회칙이 정관 등에 위반된 경우에 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분회회칙이 정관 등 및 지부회칙에 위반된 경우에 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세칙, 규칙과 규정의 제정 등) ① 정관 제63조에서 정한 "정관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대의원총회에서 정할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전2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삭제),	**제38조 (세칙, 규칙과 규정의 제정 등)** ① 정관 제63조에서 정한 "정관의 시행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정관 제63조에서 정한 "회무의 수

보수교육, 회관건립, 정책기획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명예회원, 한의언론문화상, 인사, 사무처리, 한의신문관련 등의 회무와 경리 등 재무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명칭하여 이사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행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교육, 회관건립, 기획조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명예회원, 한의언론문화상, 인사, 사무처리, 한의신문, 회무와 경리 등 재무,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제39조 (전회원 직접투표 관련) 전회원 직접투표는 인터넷투표방식 또는 우편투표방식 또는 투표용지를 통한 직접투표방식으로 시행하며, 본회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하며,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해서 시행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39조 (회원 투표)** ① 전회원 투표는 정관 제9조의 2에 의하여 시행하고, 지부 및 분회의 회원투표는 정관 제9조의 2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② 회원투표는 선거에 준용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후단과 본항에서 회원투표를 준용하는 경우 등록된 회원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원투표의 관리는 제41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되, 회원투표의 공고시 회장은 단독으로 또는 선관위장과 공동으로 또는 선관위장에 위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선거에 준용되는 회원투표는 제41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신설>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정관 제8조와 제9조에 의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때

	2.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선거에서 당해 회비를 기준으로,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1. 회장의 선거는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지부장의 선거는 지부회비를 기준으로 한다. 3. 대의원의 선거는 중앙회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입회비 및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체납한 자한다.
<신설>	**제4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3인, 대의원 의장단이 지명하는 3인과 감사 3인이 각각 1인씩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

	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남은 위원중에서 다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당해 지명자가 새로 지명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정관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며, 위원은 본회 및 산하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제규칙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회원투표관리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⑦ 임원선거·대의원선거·회원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시행세칙이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3. 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제3항의 단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